

# LEGISLATIVE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  
DECEMBER  
법제이슈브리프  
vol. 16



발간년월 2016년 12월(통권 제 16호)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인 이익현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문의 한국법제연구원 기획평가실  
전화번호 82-44-861-0317 | 홈페이지 [www.klri.re.kr](http://www.klr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 국내법상 '잊힐 권리'<sup>1</sup>의 보호 범위

###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김태열

前 SK커뮤니케이션 고객인프라팀  
팀장

1 'right to be forgotten'을 국내에서는 '잊혀질 권리'로 주로 번역 · 사용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맞춤법 표기상 '잊혀지다'는 이중피동으로 잘못된 표현이므로 '잊히다'를 활용한 '잊힐 권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잊힐 권리'로 사용하기로 한다.

### ■ 문제의 제기

- 유명 연예인 A씨는 자신과 관련된 연관검색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에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고자 한다. 이 경우 A씨의 삭제 요청은 국내법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빅데이터(Big Data)'시대에 온라인 공간 곳곳에 남겨진 우리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한편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나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자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sup>2</sup>를

의미하는 '소위 잊힐 권리(이하 잊힐 권리)'의 법제화 여부가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잊힐 권리'의 개념과 국내법상 인정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모색해보자 한다.

2 권현영 외,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p.11

## ■ ‘잊힐 권리’의 개념

- 2010년 유럽위원회는 ‘잊힐 권리’를 ‘개인정보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개인의 권리’로 정의하였다.<sup>3</sup> 즉 잊힐 권리란, 인터넷에서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되었으나, 이미 일정한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본인과 무관해진 시점에서도 이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

손과 같은 침해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up>3</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609 final, 2010,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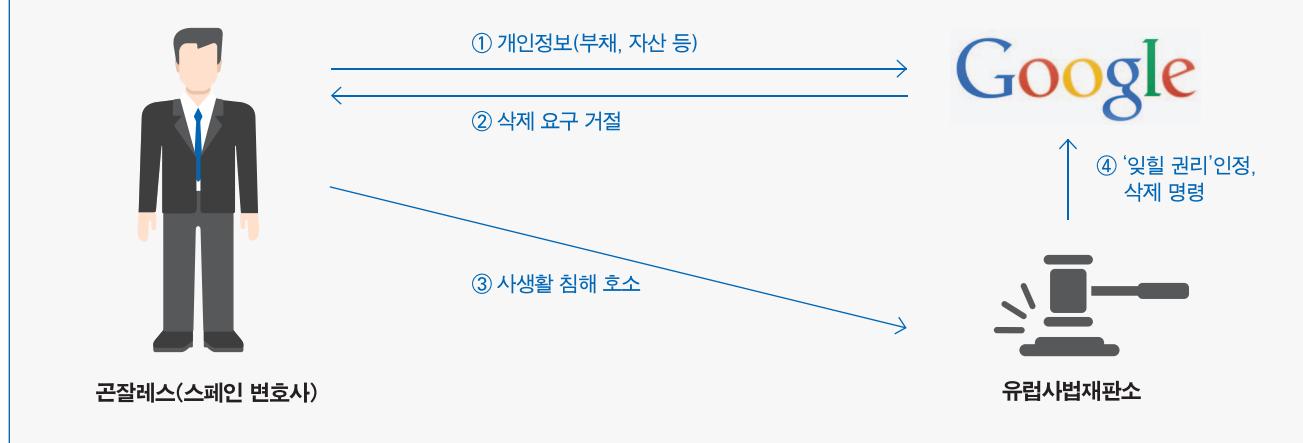
## ■ ‘잊힐 권리’가 논의된 배경

-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이하 ‘곤잘레스’라 함)는 1998년에 보도되었던 자신의 신문기사 내용(채무 내역과 재산 경매)에 대해서 이젠 형편도 피고 빛도 다 갚았으니 그 신문 내용은 자신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하여,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에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는 삭제하지 않되, 구글 화면에서 관련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연히 구글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제소하였다.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색 결과

구글에 링크된 해당 웹페이지의 정보가 합법적인 경우에도 링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최종 결정하여 ‘잊힐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sup>4</sup>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촉발되었다.

<sup>4</sup> 블로터, ‘잊혀질 권리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거나’, <http://www.bloter.net/archives/196396> (방문일자 2016. 10. 6.)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과정



(출처 : 국민일보, 잊힐 권리 vs 기억할 권리)

## ■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 우리나라의 경우 EU처럼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개인정보 열람, 정정 및 삭제 등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하여 법적 보장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명연예인 A씨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제44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 검토

인터넷에 있는 개인정보 및 연관검색어의 삭제 요청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검토해볼 수 있는 법률이 2011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파기,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특히 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 ·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검토

검색엔진사업자(포털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up>5</sup>,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sup>6</sup>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상의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보호되는 「개인정보」<sup>7</sup>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 따라 삭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의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위해 검색엔진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파일 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이지 검색엔진 검색창을 통해 나타나는 검색결과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검색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검색엔진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검색결과 제외 및 연관검색어 삭제의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에도 동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자체 로직에 따라 완성되는 연관검색어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인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행법상 일정 부분 개인정보 및 사생활, 명예훼손 침해에 해당되는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 “검색결과 제외”에 대한 부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sup>9</sup> 검색엔진을 통한 결과에 대한 검색결과 제외 또는 연관검색어 삭제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에서 마련한 정책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제시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KISO 정책규정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 주고 있다.<sup>10</sup>

- 5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8 백수원, '잊혀질권리의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 9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의 구글 사건도 검색 결과 노출 제외로 판결되었다.
- 10 실제 해당 사건에서 포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의 자초지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증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됨에 따른 검색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해당 검색어가 언론에 익명처리 되지 않고 모두 실명으로 거론 되는 점 등을 들어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이 신청한 그것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없어” 해당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의

###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 가이드라인’<sup>11</sup>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 이전에 2016년 4월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법상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본인

게시물’에 한해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한해 사용자들의 접근을 배제(검색에서 제외)하는 일종의 ‘잊힐 권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11 이하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 4 ; 김태열, “잊혀질 권리”, 「인터넷과 법」, (사)지방자치연구원, 2016, pp. 207~208 참조.

## 1. 주요 내용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 개요는 다음과 같다.

### 〈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 개요 〉

#### 이용자 본인

- ① 이용자 본인이 직접 자기계시물을 삭제 시도
- ②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 ③ 게시판 관리자의 접근배제 조치 후, 검색목록 배제를 원하는 경우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 요청

※ (예외)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직접 검색목록 배제 요청

요청

통지

#### 사업자

- 〈 게시판 관리자 〉
  - 블라인드 처리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 실시
  - 〈 검색서비스 사업자 〉
    - 캐시 등을 삭제하여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배제 조치 실시

이의신청

통지

#### 제3자

접근배제 요청인이 아닌 자신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접근제거 요청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위한 주요 핵심 내용은 ①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대상이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 ②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탈퇴자도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③ 사자(死者)도 사전에 유족 또는 지정인을 설정해 놓으면 신청할 수 있고, 사자(死者)의 지정인 또는 유족이 입증서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2. 가이드라인의 한계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되면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sup>12</sup>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는데, 텔퇴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해도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요청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비실명 기반 서비스의 경우 본인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보관 기간에도 어려움이 있게 된다.<sup>13</sup> 세 번째는 검색어 결과 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검색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요청하면 가능하지만, 검색어 결과 배제 요청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sup>14</sup> 마지막으로 국외 사업자의 경우 블라인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검색배제(DB cash만 삭제)로 처리되고, 국내 사업자는 블라인드(영구)로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 12 개인정보의 보존 기간이 명시된 법률 현황

근거법령	개인정보의 종류	보존기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전당 거래금액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 종류 및 금액, 상대방에 관한 정보,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당 거래금액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거래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대금 결제 및 제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	로그기록자료, 접속지의 추적자료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 종료기간, 사용도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12개월

13 접근배제 요청 처리 후 제3자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배제 요청 관련 자료는 영구보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14 검색어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검색어 로봇이 클롤링 등을 통해 결과를 노출하다 보니 검색어 결과 배제 요청이 되어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검색어 요청이 많아지면 검색어가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한계가 있게 된다.

## 3. 국내 가이드라인과 해외 ‘잊힐 권리’의 비교

국내 가이드라인과 유럽의 ‘잊힐 권리’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유럽
<b>주체</b>	자연인으로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 (텔퇴자, 사자(死者)의 지정인 또는 유족 및 본인임을 입증한 자 모두 포함)
<b>적용 범위</b>	작성한 게시글 및 검색배제
<b>적용 방법</b>	블라인드 (영구)
<b>결과 통보</b>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
<b>제3자 이의신청</b>	가능
	제3자 작성 글
	검색배제만 해당 (원본은 그대로 보존)
	검색배제 (DB cash만 삭제)
	없음
	없음

## ■ 검토

- 국내에서 시행되는 소위 ‘잊힐 권리’인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 요청 가이드라인’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되었고,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글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잊히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이다. 특히 ‘검색결과 배제’를 통해 현재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근배제를 요청받는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sup>15</sup>에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배제 예외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적용하고 있다. ‘잊힐 권리’보

호를 법제화하여 강화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율 방식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15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이드라인에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혹은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게시판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접근배제 요청을 하더라도 접근배제 예외 기준을 적용하였다.

## ■ 정리하며 : ‘잊힐 권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 전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창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가치와도 충돌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sup>16</sup> 개인정보(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마땅하지만, 개인정보(프라이버시)로 보호되지 않는 정보까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잊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sup>17</sup> ‘잊힐 권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적 보호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 16 김용선, “Right To Be Forgotten”2015. 12. 31 <http://story.visualdive.co.kr/2015/05/%EC%9E%8A%ED%98%80%EC%A7%88-%EA%B6%8C%EB%A6%AC/> (방문일자, 2016. 10. 6)

- 17 김용선, 앞의 자료 중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태열, “잊혀질 권리”, 「인터넷과 법」, (사)지방자치연구원, 2016.
- 권현영 외,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계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
- 백수원,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4
- 블로터, ‘잊혀질 권리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거나’, <http://www.bloter.net/archives/196396> (방문일자 2016. 10. 6.)
- 김용선, “Right To Be Forgotten”2015. 12. 31, <http://story.visualdive.co.kr/2015/05/%EC%9E%8A%ED%98%80%EC%A7%88-%EA%B6%8C%EB%A6%AC/> (방문일자, 2016. 10. 6.)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609 final, 2010.